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40호 2019. 7. 18.(목)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81호	도로명주소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19-92호	남해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928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6
남해군 공고 제2019-938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7
남해군 공고 제2019-944호	양식어업면허처분 및 소멸 공고문	12
남해군 공고 제2019-96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5
남해군 공고 제2019-972호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남해군 공고 제2019-975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

알 림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2019-15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 예고	31
-------------------------	------------------------------	----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8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73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7.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연번	중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돌건리 294-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돌건로 17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양아리 807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삼주로 589	20090427	삼주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원효대사의 전설에서 유래하였으며, 상주는 모래비치가 위치하는 길임
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520-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664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프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통진리 8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567	20090427	행진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5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로 89-1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오용에서 연곡, 적량으로 연결되는 도로임
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530-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로 89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오용에서 연곡, 적량으로 연결되는 도로임
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87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로 276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오용에서 연곡, 적량으로 연결되는 도로임
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947-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284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12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삼봉로 197	20090427	마을 뒤에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삼봉산이 있음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벌리 178-3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503-46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636-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고설로83번길 11-5	20090427	고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상주리 1124-3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남해대로697번길 12-1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65-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오로61번길 28-10	20100915	망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호리 12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542번길 35-204	20091023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연번	중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취리 산4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193-152	20190618	건축물대장 생성에 의한 건물번호폐지
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취리 산50-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193-148	20190618	건축물대장 생성에 의한 건물번호폐지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돌건리 294-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돌건로 17	20190617	지번변경에 의한 폐쇄

남해군 고시 제2019-92호

남해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남 해 군 수

1. 위 치

- 2-129호선 : 남해읍 북면리 570-1번지 일원
- 3-52호선 : 미조면 송정리 1398-10번지 일원

2. 연 장 : 1,173m

- 2-129호선 : 405m
- 3-52호선 : 768m

3. 남해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합계	2	1,173	-	-	1	405	1	768
대로	-	-	-	-	-	-	-	-
중로	-	-	-	-	-	-	-	-
소로	2	1,173	-	-	1	405	1	768

나.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29	8	국지 도로	405	남해읍 북변리 570-1	남해읍 아산리 173-3	일발로			도시 지역
신설	소로	3	52	5	국지 도로	768	미조면 송정리 1398-10	미조면 송정리 산200-6	일발로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129호선	○ 신설 - B = 8m, L = 405m	○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소로2-27호선 에서 분리되어 신규결정
-	소로 3-52호선	○ 신설 - B = 5m, L = 768m	○ 천하수원지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 여 이를 확장함으로서 차량 등의 안전 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함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928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32호	정치망어업 (정치망)	멸치 등	상주 소량	288,100	2019.07.12 2029.07.11 (10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355번길 29	이인균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51호	정치망어업 (정치망)	멸치 등	상주 양아	288,100	2009.07.12 2019.07.11 (10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355번길 29	이인균	재개발

※ '18/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9-938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9.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개설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34-2번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125m, B=12m
- 라. 공사기간 : 2019. 1. ~ 2020.12.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34-2번지 외 13필지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7. 9. ~ 2019. 7. 24.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9년 9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1부.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합계				25,599	1,350						
1	서면리	334 -2	답	299	299	장O선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2	서면리	336 -3	답	7	7	김O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3	서면리	336 -4	임 야	8	8	김O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4	서면리	337 -2	답	15	15	정O 애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93번길	사하 농업 협동 조합	부산 사하구 당리동	근 저 당	
5	서면리	337 -3	대	15	15					대 지 권	
6	서면리	335 -1	대	230	150	강O성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 가길				
7	서면리	335 -5	답	109	109	김O표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 길	남해 신용 협동 조합	남해읍 북면리	지 상 권 대 지 권	

남 해 군 공 보

2019년 7월 18일

제 640 호 (11)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8	서면리	335 -6	답	1	1	김O표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 길	남해 신용 협동 조합	남해읍 북면리	지 상 권 대 지 권	
9	서면리	359 -10	답	227	227	한O심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 길				
10	서면리	359 -12	답	125	125	이O철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77				
11	서면리	359 -13	답	17	17	이O철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77				
12	서면리	360 -3	답	181	181	임O숙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 가길				지분 11/13
						임O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2길				지분 2/13
13	서면리	491	천	23,653	164	국 (국토교통부)					
14	서면리	494 -2	도	712	32	국(국 토교통 부)					

남해군 공고 제2019-944호

양식어업면허처분 및 소멸 공고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1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 초음	30,000	2019.07.13 2029.07.12 (10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66	심광득 외 1명 (김시태)	제110호재 개발
남해양식 제51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40,000	2019.07.13 2029.07.12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49번길 1-6	정규현	제111호재 개발
남해양식 제520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남해 선소	80,000	2019.07.13 2029.07.12 (10년)	고성군 하일면 용태1길 25-19	구자홍 외 1명 (이숙향)	제112호재 개발
남해양식 제521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40,000	2019.07.13 2029.07.12 (10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54, 102동1203호	김대열 외 1명 (정운춘)	제113호재 개발
남해양식 제522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설천 진목	30,000	2019.07.16 2029.07.15 (10년)	사천시 벌리6길 82, 701호	김희선 외 1명 (조재천)	제114호재 개발
남해양식 제523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19.07.16 2029.07.15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65번길 3	김정자	제115호재 개발
남해양식 제524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000	2019.07.16 2029.07.15 (10년)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229	김판석 외 1명 (김대련)	제116호재 개발
남해양식 제525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광천	40,000	2019.07.16 2029.07.15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 번다길 7	정원규	제117호재 개발

※ '19/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 해 군 공 보

(14) 제 640 호

2019년 7월 18일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10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 초음	30,000	2009.07.13 2019.07.12 (10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66	심광득 외 1명(김시대)	
남해양식 제111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40,000	2009.07.13 2019.07.12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49번길 1-6	정규현	
남해양식 제112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남해 선소	80,000	2009.07.13 2019.07.12 (10년)	고성군 하일면 용태1길 25-19	구자홍 외 1명(이숙향)	
남해양식 제113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40,000	2009.07.13 2019.07.12 (10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54, 102동1203호	김대열 외 1명(정윤춘)	
남해양식 제114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설천 진목	30,000	2009.07.16 2019.07.15 (10년)	사천시 벌리6길 82, 701호	김희선 외 1명(조재천)	
남해양식 제115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09.07.16 2019.07.15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65번길 3	김정자	
남해양식 제116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000	2009.07.16 2019.07.15 (10년)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229	김판석 외 1명(김대련)	
남해양식 제117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광천	40,000	2009.07.16 2019.07.15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 번다길 7	정원규	

남해군 공고 제2019-96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정희0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소하천명		동대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1037		
	면적	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 7. 16. ~ 2019. 12. 30.		
	목적 및 사유	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19 - 972호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축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해군 건축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미 반환 규정 삭제(안 제23조)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시행(안 제28조)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대상 다중이용업의 바닥면적 합계 확대 시행(안 제31조)

라.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5조)

마.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시공 검사 대상건축물과 주기 규정 신설 (안 제39조)

- 바. 안 제39조 신설에 따른 기존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조항 변경
- 사.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축소 및 총 부과 회수 삭제와 이행강제금 1년 부과횟수 신설(안 제4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87, 팩스 860-3739, e-mail : ria1223@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전화 055-860-3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건축물로 한다” 로 한다.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하여 법 제22조를 준용하는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중 “500제곱미터” 를 “1,000제곱미터” 로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조명·조경·파고라·긴 의자를” 을 “조명·파고라·긴 의자 등 편의시설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등” 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으로 한다.

제44조 앞에 “제7장 건축협정” 을 삭제한다.

제45조 앞에 “제8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한다.

제45조(중전의 제44조) 앞에 “제7장 건축협정” 을 삽입한다.

제46조(중전의 제45조) 앞에 “제8장 보칙” 을 삽입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46조(중전의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46조(중전의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별표3 제1호다목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p><신 설></p>	<p>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p>
<p>제39조 ~ 제43조 (생 략)</p>	<p>제40조 ~ 제44조 (현행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와 같음)</p>
<p>제7장 건축협정</p>	<p><삭 제></p>
<p>제44조 (생 략)</p>	<p>제45조 (현행 제44조와 같음)</p>
<p>제8장 보칙</p>	<p><삭 제></p>
<p>제4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액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회수 : 2회</p> <p><신 설></p> <p>② ~ ④ (생 략)</p>	<p>제4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신 설></p>	<p>제7장 건축협정</p>
<p>제46조 · 제47조 (생 략)</p>	<p>제47조 · 제48조 (현행 제46조 및 제47조와 같음)</p>
<p><신 설></p>	<p>제8장 보칙</p>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4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나. (생 략)	(생 략)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생 략)
라. ~ 바. (생 략)	(생 략)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나. (생 략)	(생 략)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생 략)
라. ~ 바. (생 략)	(생 략)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4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현행과 같음)
라.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라.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9-975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과 관리·운용, 사용 용도 전반에 대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3조)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 나. 기금의 사용금액 비율 변경(제5조)
 - 기금 사용금액 범위 : (당초) 100분의 20 → (변경) 100분의 30
 - 다. 기금의 용도 변경사항 신설(제6조)
 - 종구갱신 및 생산기반 조성, 유통·마케팅, 농자재지원 등

- 라. “마늘업무 담당 주사” 를 “마늘업무 담당 팀장” 으로 변경(제8조 및 제9조)
-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8월 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8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42, 팩스 055-860-3983
- 3). 이메일 : dltjdgh89@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마늘팀(☎055-860-39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2.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지원 등
3. 남해마늘 명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유통·마케팅

제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 를 “담당팀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의회 의원

제9조제5항 중 “두며 마늘업무 담당주사가” 를 “두며, 간사는 마늘업무 담당팀장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이용) ① (생략) ② 기금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도록하되, 남해마늘 명품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2.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지원 등 3. 남해마늘 명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유통·마케팅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 2. (생략) 3. 기금출납원 : 마늘업무 담당주사 ② (생략)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담당팀장 ② (현행과 같음)

<p>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장, 남해군 농업협동조합운영협의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신설></p> <p>1. 2. (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u>마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⑥ (생략)</p>	<p>1. <u>군의회 의원</u></p> <p>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⑤ ----- <u>두며, 간사는 마늘업무 담당팀장이 -.</u></p> <p>⑥ (현행과 같음)</p>

알 림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15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0.

남 해 군 수

- 1. 공고기간 : 2019. 7. 10. ~ 2019. 7. 30. (21일)
- 2.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 ※ 원인자부담금(원) = 1일 오수발생량(m³)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
- 4.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m³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내역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320,000원/m³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898,000원/m³

※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예정(공고일부터)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2019. 7. 30.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상하수도사업소

- 팩 스: 055-860-3751

○ 문의처: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55-860-333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